

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

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 제51조제2항에 따라 ‘고흥 우주해양 리조트특구’의 특구계획을 변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14년 8월 8일
중소기업청장

1. 변경목적

-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감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을 추진

2. 변경내용

-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부지면적(m ²)			비 고	
	기 정	변 경	증 감		
합 계	1,157,970	1,157,970	-		
휴양문화 시설	소계	101,940	108,660	증)6,720	9.4%
	우주해양전망대	23,900	23,900	-	
	종합해양레포츠센터	25,100	25,100	-	
	로켓발사실습장	12,000	12,000	-	
	우주과학교육관	4,800	4,800	-	
	해양생물수산교육관	4,100	4,100	-	
	미리내조각공원	30,700	23,050	감)7,650	
	우주광장	1,340	1,340	-	
	오토캠핑장	-	14,370	증)14,370	
상가시설	소계	-	2,150	증)2,150	0.2%
	관광편의시설	-	2,150	증)2,150	
숙박시설	소계	98,710	98,150	감)560	8.5%
	타워콘도	22,200	22,200	-	280실
	빌라형콘도(A)	38,150	38,150	-	40실
	빌라형콘도(B)	18,660	18,660	-	30실
	빌라형콘도(C)	19,700	19,140	감)560	120실→110실
운동오락 시설	소계	561,700	561,700	-	48.5%
	골프장	561,700	561,700	-	
공공편익 시설	소계	24,310	24,310	-	2.1%
	도로	14,210	14,210	-	

	공공주차장	8,070	8,070	-	
	보행데크	1,200	1,200	-	
	오수처리장	830	830	-	
녹지	소계	371,310	363,000	감)8,310	31.3%
	녹지	371,310	363,000	감)8,310	

○ 재원조달방법

- (당초) 3,239억원(국비 65, 지방비 66, 민자 3,108)
- (변경) 2,914억원(국비 91, 지방비 91, 민자 2,732)

○ 사업기간 : 2008년 ~ 2015년(변경 없음)

○ 특화사업자 : 변경 없음

○ 규제특례사항 : 변경 없음

3.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문의처

특 구 명	중소기업청 지역특구과	지방자치단체
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	T:042-481-1613 F:042-481-1620	전라남도 고흥군청 T:061-830-6596 F:061-830-5588 www.goheung.go.kr